

#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지원 방안<sup>1)</sup>

박은정 부연구위원 · 유해미 연구위원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다차원적 빈곤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는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양육환경 및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및 부모 효능감 등 심리·정서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방안에는 보육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기관보육 접근성 제고, 긴급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보육시설 미이용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다양한 현물 및 문화활동 지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부모 지원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 양육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이 제시되었다.

## 1. 들어가며

최근 육아정책은 무상보육 실시 및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적 비용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보편적 비용지원만으로 빈곤 아동의 결핍과 복합적인 양육 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빈곤가구 아동의 궁극적인 탈빈곤은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충족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교육 및 보육 기회, 의료 및 건강, 놀이 및 문화 경험, 가족생활 등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결핍이나 박탈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2019년 제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기존 아동정책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강화하고자 요보호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아동 권리 보장 및 돌봄 체계 구축, 아동 건강 보장, 놀이 혁신을 골자로 설계되었다.<sup>2)</sup> 그러나 보편적 아동정책 기조 속에 다차원적 결핍을 경험하는 빈곤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여, 이는 아직 풀어내지 못한 정책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2019년 실시한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구

1) 본고는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 2019)」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2) 관계부처합동(2019. 5. 23). 포용국가 아동정책.

와 비빈곤가구 비교를 통해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다차원적 양육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 2.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본고는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경제적 결핍 경험, 가족관계 인식, 가족이나 이웃 등의 도움, 기관 및 시설 접근성, 가정 내 교육환경 등 다차원적인 양육환경 실태를 짚어보았다. 또한 부모의 정서와 태도는 영유아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역량,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감과 상호작용 조사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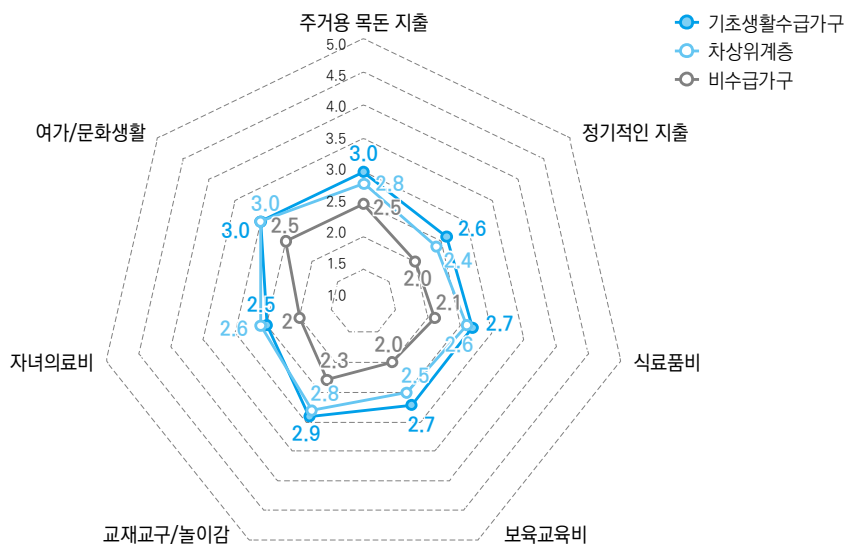
부모 효능감 및 양육태도를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아동 방치 상황과 기관 이용 현황을 통해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의 보육현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빈곤가구는 법정 빈곤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지칭하고, 비빈곤가구는 비수급가구를 말한다. 그리고 정도를 측정할 항목에서는 5점 척도<sup>3)</sup>를 사용하였다.

### 가. 양육환경

#### 1) 경제적 결핍 경험

영유아를 둔 가구의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주거용 목돈 지출과 여가/문화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항목에서 법정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경제적 고충이 큰 것으로



[그림 1]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염지원(2019).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3)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정 빈곤가구와 비수급가구는 보육교육비와 교재교구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그림 1 참조). 이는 보편적 지원만으로는 빈곤가구의 자녀 보육·교육비용 지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녀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교재교구비와 여가 및 문화생활비와 관련하여서는 평균 대비 300만원 이하 가구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보다 자녀의료비에서 어려움의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를 둔 빈곤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 2) 가족관계 인식

영유아 가구의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3~3.6점, 차상위계층은 3.5~3.7점, 비수급가구는 3.6~3.8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15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서 전체 가구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빈곤가구는 본인 가족에 대한 상대적 행복감, 가족 내 상호 존중·긍정적 감정 상호 표현·상호 격려 정도, 가족의 어려움 극복 가능성 등 모든 조사 항목에서 비빈곤가구에 비해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 3.0~3.3점, 차상위계층 3.3~3.5점, 비수급가구 3.4~3.6점으로 나타나, 빈곤가구의 부부관계 및 결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결혼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뿐

만 아니라 부부의 평등한 관계 정도, 부부가 동참하는 양육, 부부간의 원활한 소통 정도 항목에서도 빈곤가구의 만족 수준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3) 가족이나 이웃 등의 도움

영유아 가구가 자녀 양육 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움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생활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도움 정도는 2.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긴급 시 자녀돌봄 지원도 2.9점에 그쳤다. 특히 긴급 시 자녀돌봄 지원 정도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26%인 반면 도움을 받는 편이라는 응답은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주변에서 양육도움을 받는 정도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기관 및 시설 접근성

영유아 가구의 거주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한 주거환경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체험시설·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의료기관의 접근성과 놀이터/공원이 도보 20분 이내에 위치하는지, 보육기관이 도보/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위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문화 및 체험시설(3.1점), 놀이터 및 공원 등(3.7점)에 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육아지원서비스 기관(2.9점)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외하면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접근성이 낮았다. 특히 읍면지역은 문화시설 및 체험시설과 의료시설의 접근

성이 3점을 밑돌 정도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빈곤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 요구된다.

## 5) 가정 내 (교육)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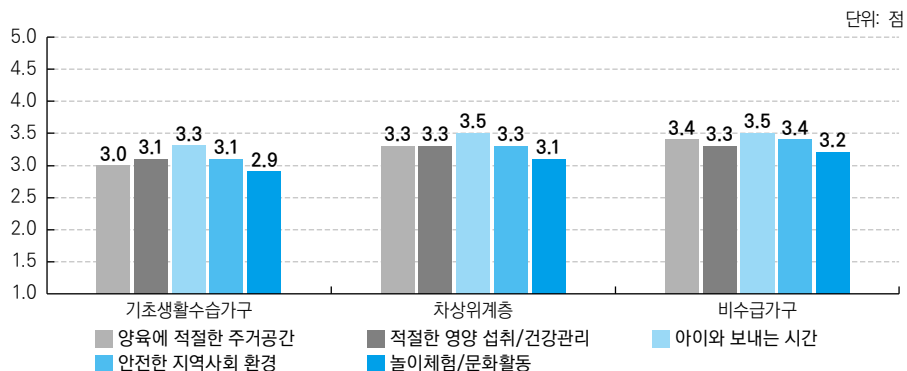
가정에 교재교구 구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책 보유 정도와 실내 놀이 장난감/기구 보유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응답은 각각 3.1점, 3.4점이었으며 비수급가구는 3.4점, 3.7점으로 나타나, 법정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구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 구분 결과에서는 250만원 이하 가구의 교재교구 구비 수준이 전체 가구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6) 양육환경 충족도

영유아 가구의 종합적인 양육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환경 충족도를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 양육환경의 충족도는 놀이 체험 및 문화활동(3.2점)이 가장 낮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3.5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모든 가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그림 2 참조). 주목할 점은 빈곤가구가 비빈곤가구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양육환경 충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모든 항목에서 차상위계층과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응답결과가 3.0점으로 3.4점인 비수급가구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항목이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적절한 영양 섭취 및 건강관리 항목에서 비수급가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영양 결핍이나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더욱 강화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는 양육에 적절한 주거공간 및 위생적인 실내외환경, 놀이 체험 및 문화활동 영역에서 평균에 비해 낮은 충족도를 보여, 지원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 전일제 근로가구,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해당 가구가 빈곤가구에 속하는 경우 전반적인 결핍이 우려된다.



[그림 2] 영유아 가구의 양육환경 충족도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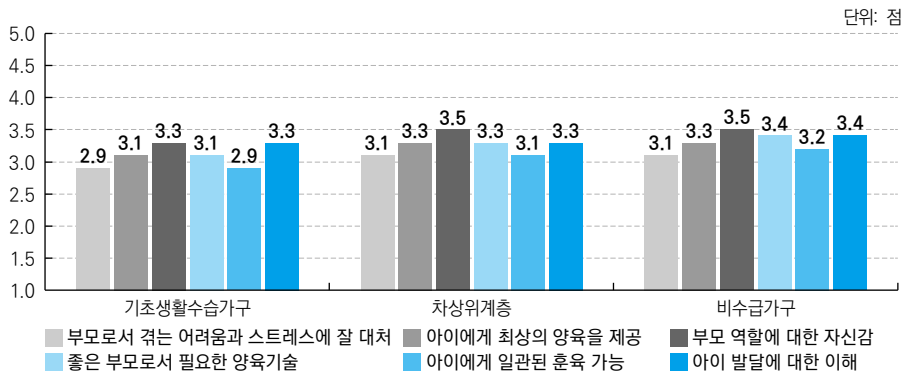
## 나. 부모 효능감 및 양육 태도

### 1)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역량

영유아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역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가구에서 항목별 응답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모든 가구에서 양육 어려움 및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정도와 아이에게 일관된 훈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고,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한편,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모든 항목에서 차상위계층과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부모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2)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 조사결과에서는 출산 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한편, 전체 응답에서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다는 인식은 가장 낮았으나,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해당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는 응답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자녀와의 관계형성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영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역량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염지원(2019). 영유아 자녀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육아정책연구소.

〈표 1〉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

단위: 점

| 구분                      | 법정 빈곤가구 여부 |        |        | F     | 전체  |
|-------------------------|------------|--------|--------|-------|-----|
|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 | 비수급 가구 |       |     |
| 출산 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음    | 3.7        | 3.8    | 3.7    | 0.7   | 3.7 |
|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로움 | 3.1        | 2.9    | 2.8    | 4.2*  | 2.9 |
|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음       | 3.0        | 2.9    | 2.9    | 1.6   | 2.9 |
|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음        | 2.9        | 2.9    | 2.8    | 1.2   | 2.8 |
|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짐       | 2.4        | 2.2    | 2.1    | 6.9** | 2.1 |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염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pp. 212~214를 바탕으로 재구성.

\* $p < .05$ , \*\* $p < .01$

〈표 2〉 자녀와의 친밀감과 상호작용

단위: 점

| 구분                           | 법정 빈곤가구 여부 |        |        | F    | 전체  |
|------------------------------|------------|--------|--------|------|-----|
|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 | 비수급 가구 |      |     |
| 나는 내 아이와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 3.8        | 3.8    | 3.9    | 4.0* | 3.9 |
| 나는 아이가 하는 놀이나 활동에 참여한다       | 3.6        | 3.7    | 3.7    | 0.4  | 3.7 |
|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 3.4        | 3.5    | 3.6    | 3.9* | 3.6 |
| 나는 자녀와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한다         | 3.5        | 3.6    | 3.7    | 2.1  | 3.6 |
| 나는 자녀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함께 노래를 부른다 | 3.6        | 3.7    | 3.8    | 3.4* | 3.8 |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pp. 214~216을 바탕으로 재구성.

\* $p < .05$

### 3) 자녀와의 친밀감과 상호작용

영유아 가구의 자녀와의 친밀감 항목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항목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전체 항목에서 법정 빈곤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 책 읽어주기, 노래 불러주기/ 함께 노래하기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보육 실태

### 1) 가정 내 아동 방치

지난 1주일 동안 영유아 자녀가 하루에 30분 이상 집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형제 및 자녀와 지낸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0.9%, 차상위계층은 18.5%, 비수급가구는 12.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법정 빈곤가구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비율이 비수급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족에서 아동이 방치된 비율이 각각 19.8%와 30.3%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법정 빈곤가구 중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2) 기관 이용 현황

전체 응답자가 현재 이용 중인 반일제 이상 기관으로는 어린이집이 52.4%로 가장 높았으나, 영아의 경우에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가량인 49.8%로 가장 높았다(표 3 참조). 특히 0세의 경우 82.2%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세도 55.6%가 기관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미이용률은 아동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여 3세에는 7.5%에 그쳤으며, 3세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비율은 92.1%로 나타나 3세부터는 대부분의 아동이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기관 미이용률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35.1%, 차상위계층은 29.1%로, 27.7%를 나타낸 비수급가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법정 빈곤가구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관 미이용률이 높은 뿐만 아니라 최초 기관 이용 시기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계층과 비수급가구에서 자녀가 생후 36개월 이후부터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21.8%, 26%인 반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는 35.8%로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표 4 참조). 최초 기관 이용 시기의 평균값도 기초생활수급가구는 28.5개월로 차상위계층

〈표 3〉 현재 이용 기관(반일제 이상)

단위: %(명)

| 구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원  | 아이돌봄서비스 | 기관 미이용 | 계(수)  |         |
|--------------|------------------|------|-----|---------|--------|-------|---------|
| 전체           | 52.4             | 17.2 | 0.6 | 1.3     | 28.5   | 100.0 | (1,606) |
| 영유아구분        |                  |      |     |         |        |       |         |
| 영아           | 47.6             | 0.0  | 0.2 | 2.3     | 49.8   | 100.0 | ( 823)  |
| 유아           | 57.3             | 35.2 | 1.0 | 0.3     | 6.1    | 100.0 | ( 783)  |
| $\chi^2(df)$ | 582.713(4)***    |      |     |         |        |       |         |
| 아동연령         |                  |      |     |         |        |       |         |
| 0세           | 15.0             | 0.0  | 0.0 | 2.8     | 82.2   | 100.0 | ( 213)  |
| 1세           | 43.0             | 0.0  | 0.0 | 1.4     | 55.6   | 100.0 | ( 279)  |
| 2세           | 72.5             | 0.0  | 0.6 | 2.7     | 24.2   | 100.0 | ( 331)  |
| 3세           | 82.5             | 9.6  | 0.0 | 0.4     | 7.5    | 100.0 | ( 228)  |
| 4세           | 52.9             | 40.8 | 1.5 | 0.0     | 4.8    | 100.0 | ( 272)  |
| 5세           | 41.3             | 50.5 | 1.4 | 0.4     | 6.4    | 100.0 | ( 283)  |
| $\chi^2(df)$ | 1,006.082(20)*** |      |     |         |        |       |         |
| 법정 빈곤가구 여부   |                  |      |     |         |        |       |         |
| 기초생활수급가구     | 45.5             | 17.2 | 1.5 | 0.7     | 35.1   | 100.0 | ( 134)  |
| 차상위계층        | 55.9             | 11.0 | 1.2 | 2.8     | 29.1   | 100.0 | ( 254)  |
| 비수급가구        | 52.4             | 18.5 | 0.4 | 1.1     | 27.7   | 100.0 | (1,218) |
| $\chi^2(df)$ | 19.671(8)*       |      |     |         |        |       |         |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pp. 223~224에서 일부 발췌.

\* $p < .05$ , \*\*\* $p < .001$

〈표 4〉 최초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기

단위: %(명, 개월)

| 구분             | 12개월 미만     | 12~23 개월 | 24~35 개월 | 36~47 개월 | 48~59 개월 | 60개월 이상 | 계(수)         | 평균 (표준편차)  |
|----------------|-------------|----------|----------|----------|----------|---------|--------------|------------|
| 전체             | 13.3        | 31.6     | 28.9     | 17.5     | 6.3      | 2.3     | 100.0(1,117) | 25.1(13.8) |
| 법정 빈곤가구 여부     |             |          |          |          |          |         |              |            |
| 기초생활수급가구       | 10.7        | 19.0     | 34.5     | 26.2     | 6.0      | 3.6     | 100.0( 84)   | 28.5(13.6) |
| 차상위계층          | 16.5        | 35.3     | 26.5     | 11.8     | 5.3      | 4.7     | 100.0( 170)  | 24.2(14.5) |
| 비수급가구          | 13.0        | 32.1     | 28.9     | 17.8     | 6.5      | 1.7     | 100.0( 863)  | 25.0(13.6) |
| $\chi^2(df)/F$ | 21.199(10)* |          |          |          |          |         |              | 3.0        |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p. 225에서 일부 발췌.

\* $p < .05$

과 비수급가구에 비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기관 이용 시기를 늦추는 요인 중 하나는 양육수당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 자녀의 최초 기관 이용 시기를 늦춘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차상위계층과 비수급가구에서는 8.8%, 6.7%에 그쳤으나,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21.4%로

나타나 적지 않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양육수당을 부족한 양육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녀의 보육기관 이용 시기를 늦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조기 보육 및 교육의 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가구 영유아의 기관보육 문제 개선 및 양육수당의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기관 등하원 시각을 살펴보면, 8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13.1%, 차상위계층은 10.7%, 비수급가구는 7.3%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영유아가 가장 이른 시각에 등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한편,

가구특성별로는 한부모 가구 영유아의 8시 이전 등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6시 이후 하원하는 비율도 한부모 가구에서 높았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부모 빈곤가구의 경우 종일제 보육 및 시간연

〈표 5〉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주중 등원 시각

단위: %(명)

| 구분           | 등원시각          |               |               |               |               |               |                |             |               |
|--------------|---------------|---------------|---------------|---------------|---------------|---------------|----------------|-------------|---------------|
|              | 7:00<br>까지    | 7:01<br>~7:30 | 7:31<br>~8:00 | 8:01<br>~8:30 | 8:31<br>~9:00 | 9:01<br>~9:30 | 9:31<br>~10:00 | 10:01<br>이후 | 계(수)          |
| 전체           | 0.6           | 1.1           | 6.5           | 14.7          | 36.3          | 26.9          | 12.4           | 1.4         | 100.0 (1,117) |
| 가구특성         |               |               |               |               |               |               |                |             |               |
| 부부+자녀        | 0.3           | 0.8           | 6.4           | 15.0          | 35.8          | 27.3          | 12.8           | 1.6         | 100.0 ( 943)  |
| 한부모+자녀       | 4.2           | 2.8           | 11.1          | 18.1          | 38.9          | 20.8          | 2.8            | 1.4         | 100.0 ( 72)   |
| 조부모+부부+자녀    | 0.0           | 1.3           | 2.6           | 5.2           | 41.6          | 32.5          | 16.9           | 0.0         | 100.0 ( 77)   |
| 조부모+한부모+자녀   | 4.0           | 4.0           | 12.0          | 24.0          | 28.0          | 16.0          | 12.0           | 0.0         | 100.0 ( 25)   |
| $\chi^2(df)$ | 50.029(21)*** |               |               |               |               |               |                |             |               |
| 법정 빈곤가구 여부   |               |               |               |               |               |               |                |             |               |
| 기초생활수급가구     | 2.4           | 2.4           | 8.3           | 17.9          | 39.3          | 22.6          | 6.0            | 1.2         | 100.0 ( 84)   |
| 차상위계층        | 2.4           | 1.8           | 6.5           | 14.1          | 37.1          | 24.7          | 11.8           | 1.8         | 100.0 ( 170)  |
| 비수급가구        | 0.1           | 0.8           | 6.4           | 14.5          | 35.8          | 27.8          | 13.2           | 1.4         | 100.0 ( 863)  |
| $\chi^2(df)$ | 24.456(14)*   |               |               |               |               |               |                |             |               |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pp. 227~228에서 일부 발췌.

\* $p < .05$ , \*\*\* $p < .001$

〈표 6〉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주중 하원 시각

단위: %(명)

| 구분           | 하원시각          |                 |                 |                 |                 |                 |                 |             |               |
|--------------|---------------|-----------------|-----------------|-----------------|-----------------|-----------------|-----------------|-------------|---------------|
|              | 16:00<br>까지   | 16:01~<br>16:30 | 16:31~<br>17:00 | 17:01~<br>17:30 | 17:31~<br>18:00 | 18:01~<br>18:30 | 18:31~<br>19:00 | 19:01<br>이후 | 계(수)          |
| 전체           | 50.0          | 15.8            | 15.7            | 5.7             | 5.8             | 3.0             | 1.8             | 2.1         | 100.0 (1,117) |
| 가구특성         |               |                 |                 |                 |                 |                 |                 |             |               |
| 부부+자녀        | 51.5          | 16.5            | 15.0            | 6.2             | 4.8             | 3.1             | 1.7             | 1.3         | 100.0 ( 943)  |
| 한부모+자녀       | 29.2          | 11.1            | 19.4            | 5.6             | 13.9            | 2.8             | 4.2             | 13.9        | 100.0 ( 72)   |
| 조부모+부부+자녀    | 58.4          | 14.3            | 11.7            | 2.6             | 7.8             | 2.6             | 1.3             | 1.3         | 100.0 ( 77)   |
| 조부모+한부모+자녀   | 24.0          | 8.0             | 44.0            | 0.0             | 16.0            | 4.0             | 0.0             | 4.0         | 100.0 ( 25)   |
| $\chi^2(df)$ | 99.208(21)*** |                 |                 |                 |                 |                 |                 |             |               |
| 법정 빈곤가구 여부   |               |                 |                 |                 |                 |                 |                 |             |               |
| 기초생활수급가구     | 53.6          | 10.7            | 17.9            | 6.0             | 4.8             | 1.2             | 3.6             | 2.4         | 100.0 ( 84)   |
| 차상위계층        | 51.8          | 15.3            | 15.3            | 3.5             | 5.3             | 2.9             | 2.4             | 3.5         | 100.0 ( 170)  |
| 비수급가구        | 49.2          | 16.5            | 15.5            | 6.1             | 6.0             | 3.2             | 1.5             | 1.9         | 100.0 ( 863)  |
| $\chi^2(df)$ | 9.459(14)     |                 |                 |                 |                 |                 |                 |             |               |

자료: 유해미·박은정·정은희·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pp. 228~299에서 일부 발췌.

\*\*\* $p < .001$

장형 보육의 수요가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 3. 정책 방안

#### 가. 제도 기반 조성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 양육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책 방안들에 앞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빈곤가구 영유아 양육지원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2011년 제정된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빈곤아동 대상 실태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으며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 종합실태조사에서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빈곤아동에 대한 부가적 조사가 실시된 적은 없다. 즉, 기존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빈곤영유아의 실태와 욕구를 점검·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기적인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동법에 의거하여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이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과 같은 유관 주요 계획에 빈곤아동을 주요 대상이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일본과 같이 법률상에 빈곤아동 실태와 대응책 추진 상황을 매년 공표하는 것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빈곤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빈곤아동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 체계로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진단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 나.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 방안

앞서 분석한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결과를 토대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 보육시설 이용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보육교육비와 교재교구비에서 법정 빈곤가구의 부담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은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빈곤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빈곤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별도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빈곤가구의 기관보육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빈곤가구는 8시 이전에 등원하는 비율이 높고 한부모 빈곤가구의 경우 종일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빈곤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시간연장형 국공립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시에 배점 상향 조정을 통해 빈곤가구 영유아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가구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 돌봄 시 이용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빈곤가구는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 정도가 상당히 낮아 긴급하게 돌봄지원이 필요할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한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보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시설 미이용 빈곤가구의 양육실태를 점검하고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빈곤가구에서는 36개월 이후에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35.8%로 매우 높으며, 가정 내 양육환경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하거나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빈곤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빈곤가구는 현금지원 및 보육서비스 이외에도 다양한 현물 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육아용품 및 교재교구 대여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배달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빈곤가구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빈곤가구 영유아의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해 음식 현물 지원을 확대하거

나 바우처 방식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관리 및 검진 지원 서비스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매우 충족도가 낮게 나타난 놀이체험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제공 연령은 하향 조정하고 지원액은 증액하는 동시에 활용처도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빈곤가구는 물리적 양육환경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인식이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태도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나 부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에 양육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때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 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수를 반영하여 입주자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및 주거 컨설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 제시한 방안 중 빈곤가정 영유아 대상 시설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동빈곤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겠으나, 시급한 빈곤 영유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 우선순위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보육 추가 비용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기타 현물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현재 추진해볼 수 있는 지원 방안이라고 판단된다.